

영등포구의회
제13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5.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및 기타 현행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개정내용

-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된 주택”으로 변경하여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근거법령을 변경(안 제5조)
-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관련 근거조항을 구세조례에서 이관 신설(안 제7조)

-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안 제13조)
-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기간 확대를 위하여 기준일로부터 7년간을 기준일로부터 10년간으로 다음 3년간을 다음 5년간으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관광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높은 숙박비에 있다고 분석 세제 인하를 통한 객실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감면조항 신설(안 제18조)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 「문화재보호법」 전부 개정에서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 『지방세법』 제226조제3항에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구세조례」에서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기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내용 중,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재산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한 이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 도 합동작업을 실시한 후 마련한 구세감면 조례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안으로 위에서 언급한 일부 사항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5. 21.

보고자 : 김 병 욱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부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부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부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不動産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

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삭제 <2000.12.29>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국적·여권번호·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3(연금의 방식 등) ①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 이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다음 각 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 가. 제1호의 방식
 -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 한도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방식과 제3호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 ② 법 제2조제8조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란 65세를 말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경감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이하생략)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이하생략)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과학관육성법

제6조(등록) ①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②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 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문화재보호법

제5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중요민속자료의 지정)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 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이하 "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